

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

의 안 번 호	6-96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 . 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☐ 개정이유

현행 우리시 수도급수조례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시 기존 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가.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요율 변경(안 제6조)

※가정용 : 변경없음

※업무용,영업용,대중탕용 : 일반용(감면율:30%)으로 통합

※공업용 : 변경없음

☐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☐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☐ 예산수반상황 : 해당없음

☐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☐ 부서협의결과 : 해당없음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동두천시 조례 제 호

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도법 제11조의3”을 “수도법 제1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”을 “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업무용”을 “일반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부터 제5호를 모두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도 시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도시과장 주 명 구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상수도운영담당 유 현 열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김 수 근 860-2445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수도법」 제16조제5항 ----- ----- -----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“빗물이용시설”이라 함은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② (생략)	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----- --제7조제1항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수도요금의 감면) ① ~ ② (생략)	제6조(수도요금의 감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1. 가정용 : 빗물사용에 해당하는 요금의 50퍼센트	1 . -----
2. 업무용 : 빗물사용에 해당하는 요금의 30퍼센트	2. ----- 일반용
3. 영업용 : 빗물사용에 해당하는 요금의 30퍼센트	-----
4. 대중탕용 : 빗물사용에 해당하는 요금의 10퍼센트	<삭 제>
5. 공업용 : 빗물사용에 해당하는 요금의 10퍼센트	<삭 제> 5. ----- -----